

평창군읍·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9. 9 평창군수(내무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8. 9. 15

다. 상정일자 : 1998. 9. 16 제5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'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내 4개 읍·면출장소(계촌, 면은, 수항, 유천)중 면은, 수항, 유천출장소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평창군읍·면출장소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표중 “봉평면 면은출장소, 진부면 수항출장소, 도암면 유천출장소“ 란을 삭제(안제 2조, 제3조)

4. 검토의견

- 조직개편에 따라 관내 4개읍·면출장소중 계촌출장소를 제외한 면은, 수항, 유천출장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구 및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